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

김 종 순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I. 서 론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당초 의도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시장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경쟁원리를 저해하고, 공공 부문에의 투자는 투자의 효율성이 더 높은 민간부문의 투자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투자규모를 축소시켜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는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불안정하기 때문에 높은 고용 및 생산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적정수준의 정부개입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금융 및 재정정책을 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보다 더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지역경제의 개방성으로 인해 증가된 소비의 상당부분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구입에 사용될 것이고, 그 결과 지역 내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경제활성화의 효과를 실제보다 저평가하고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은 해당지역의 생산 활동을 활발하게 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과 자산가치를 증대시켜 지방세입의 기초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또 역으로 지방세입의 증가와 세출규모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진작하

는 효과를 가져온다. 증가된 재정지출은 지역개발사업에의 투자를 통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내 산업활동의 애로를 제거하며, 지역주민의 소득증가와 생산활동의 활성화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세를 인하하고 정부구매를 확대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가처분소득 및 소비의 증가와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사이에 상승적 순환관계 내지는 확대재생산관계가 효과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재정의 운영방식은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가?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지역경제활성화의 필요성

최근들어 지역경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은 세계화(globalization)로 대변되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세계화란 경제적인 의미의 국경이 사라지고 자본·기술·정보·지식은 물론 노동의 이동도 점차 자유로워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와 같이 낙후된 지방경제, 사라져 가는 지방문화를 두고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세계경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가장 보편적인 것과 가장 지방적인 것, 그리고 이 양자의 결합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방활성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없는 국가경쟁력의 강화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세일, 1992).

과거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기조는 정부 주도, 특히 중앙정부가 투자의 효율성이 높은 분야와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불균형성장방식이었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의 불균형성장방식은 인구의 집중과 이에 따른 혼잡과 밀집성의 증가로 국토이용의 비효율성과 사회적 비용의 증가 현상을 초래하였다. 그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은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지방에 대한 투자비율을 5% 증가시키고 수도권투자비율을 5% 감소시키는 경우, 단기적으로 국민 1인당 소득은 현재보다 연평균 0.10% 하락하지만, 중장기적인 국민 1인당 소득은 연평균 0.09%~0.29% 정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간 소득격차도 연평균 3.3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준, 1992). 즉, 수도권 위주의 투자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경제성장을 자체를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반면에 지방에 대한 투자증가는 그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의 증대와 지역간 소득격차의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의 장기적인 경제발

전과 지역간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큰 지방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의 관계

지방세입의 증가와 이로 인한 지방세출의 증가는 지역개발사업에의 투자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구입을 위해 사용되어 주민소득의 증가와 기업활동의 향상을 가능케 한다.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된 지방행정서비스는 생산활동의 애로를 제거함으로써 지역경제활동의 기초를 강화한다. 이러한 지역경제활동의 강화는 다시 지방세입의 증대로 환류(feed-back)되어 지역경제활동과 지방재정이 선순환과정 내지 확대재생산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역경제와 지방재정간의 상호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결과는 그리 많지 않은데 그것은 지역경제력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의 부족과 비공개라는 원천적 어려움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성태(1991) 등의 연구는 각 지역의 세출규모의 대수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지역경제력을 나타내는 GRP의 대수값을 설명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는 방법으로 지역경제력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특정지역의 GRP가 1% 증가하는 경우 세출은 0.97% 상승하고, 1인당 세출 역시 1인당 GRP로부터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GRP로 대변되는 지역생산력과 지방재정지출 사이에 거의 완벽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지방세입 가운데서도 지방세는 지역경제력과 0.686의 정(+)의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지만, 세외수입의 상관계수는 -0.529로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연구(박완규, 1997)도 있지만, 지방세입과 지역경제 사이에 상승적 보완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투자는 민간자본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재정지출과 지역경제만을 비교하는 것은 공공투자의 효과를 과장하여 보여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박희정(1994)의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투자액(1인당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투자액)과 민간투자(1인당 제조업 자본스톡), 그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도(2차산업종업원 비율), 숙련인력의 확보정도, 인구이동, 지역특성 등이 지역경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그의 연구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고도화나 전문인력과 관련된 변수는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 못한 반면 민간투자와 인구이동, 정부투자 등의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정부투자의 경우 총생산의 효과에 부(-)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민간부문의 투자는 지역경제력의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정부의 재정지출확대는 투자의 효율성이 높은 민간부문의 투자규모를 축소시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공공 투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부분의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4.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문제점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상호관계가 항상 상승적 순환관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상호간의 관계가 시너지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도 그 과실의 대부분은 국가재정으로 귀속되고, 지방세입의 증가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많은 지역소재기업들의 본사가 서울 또는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고, 금융전산망이 발달하여 지역경제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수익이 대부분 당일로 본사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지역경제성장의 과실 중 상당부분이 중앙재정으로 흡수되어 지역의 생산활동이 지역경제활성화 내지 지방재정 건실화에 기여하는 정도는 기대한 것보다 낮은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금융자산의 중앙집중 현상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였던 1980년대 초반에도 이미 지역총생산 가운데 당해

지역의 주민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비율은 1980년 기준으로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연구결과(김안제, 1982)를 고려할 때 20년이 경과한 현재의 국가재정 귀속비율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역경제활동의 결과가 지방재정의 확충에 기여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와도 관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소득과 재정수입이 토지 등 부동산에서 발생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의 과학기술의 발달과 서비스산업의 비중 확대로 지방세의 근간이 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수입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세입구조에서 소득세와 소비세의 비중은 매우 낮은 반면 부동산세목, 그것도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과세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1980년대와 같은 부동산 경기의 과열현상이 재현되지 않는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확충에 따른 어려움은 앞으로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셋째, 적정수준의 지방재정이 확보되는 경우에도 지방세출규모가 영세하거나, 세출구조가 과도하게 경상비 위주로 되어 있는 경우 지방정부는 지역경제활동 진작을 위한 독립적인 투자단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총액에서 일반행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의 4.0%, 일본의 11.1%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물론 지방정부의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에 따라 지방정부

의 지출규모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지출구조를 외국 지방정부의 지출구조와 평면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공조직의 운영에 있어 일반행정비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토록 과다하다는 것은 조직운영에 지나치게 많은 재원이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경비가 세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외국에 비해 낮고, 증가된 세입의 대부분이 장기적 시설투자보다는 단기적인 경상지출에 사용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개선속도가 더디고,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상호간의 상승적 순환과정 또는 확대재생산과정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지방세입의 증가와 이에 따른 세출규모의 확대가 지역경제를 진작하는 효과는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재정지출의 증가는 사회간접자본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전제 아래 사회간접자본저량, 노동투입량, 자본저량, 광공업 총생산액 등을 설명변수로, 광공업총생산량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비도시권이나 대도시 근접권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의 1% 상승이 광공업 총생산액을 0.3%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도시권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의 1% 상승이 광공업총생산액을 0.068% 증가시키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 혼잡과 밀집으로 인한 비효율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적정수준의 지방재정력 격차해소가

지역경제의 격차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5.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

지금까지 논의한 문제점들과 그 개선방안을 정리해 보면 크게 보아 네 가지이다. 첫째, 지방재정의 전반적 취약성으로 인해 투자재원이 부족하여 지방재정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지역간에 심각한 재정격차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한 투자규모는 큰 반면, 투자의 효율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투자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다. 따라서 과도한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경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과실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지방재정의 확충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동의 과실이 지역에 귀속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넷째, 확보된 재원이 경상적 경비에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재원배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방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투자재원의 확충

투자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동의 과실이 지방재정확충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즉 지방세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지식산업의 비중확대는 종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부동산 조세수입만으로 충당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방재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첫째,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생산·판매·소비행위는 각종 환경오염은 물론 교통시설의 증가와 같은 투자수요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설계된 지방소비세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방재정 운영의 포괄적인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이 글에서 지방소비세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일본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수용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일정세율을 과세한 다음, 기초자치단체와 일정비율에 따라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동산과세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충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에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다양한 이전거래과세의 비중이 높도록 되어 있는 반면 보유과세의 비중은 매우 낮다. 그러나 부동산세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수신장률은 1988년 이후 지

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인한 거래증가현상이 재현되지 않는 한 취득세·등록세의 신장률은 꾸준히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이 과도하게 이전거래 과세에 의존하는 상태에서는 부동산 경기위축에 따른 지방세수의 급격한 변동과 이로 인한 지방재정의 불안정성은 상존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동산보유과세는 총조세, 지방세,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동산과세를 주요세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 비하여 월등히 낮고, 부동산 관련세수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동산보유과세의 비율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하여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할 필요성과 이를 흡수할 경제적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보유과세의 강화를 위한 과표현실화율 또는 명목세율의 조정은 그 목표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대폭적인 세부담의 증가를 수반하는 관계로 조세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하고, 그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보완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최근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과표현실화율의 상향조정은 부동산과세의 획일적 인상이라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지역간 재정력 격차의 완화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체로 재정력이 양호한 반면, 다른 지

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의 증대에 급급한 나머지 투자성 경비의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다. 즉 투자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 공공지출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반면, 투자의 효율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취약한 재정력으로 인해 공공지출이 적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형평성의 문제 이외에도 투자재원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도 과도한 지역간 재정력 격차는 해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지역간 편차가 적은 세목을 위주로 세목을 재배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부족액을 단순히 보전해주거나 특정한 사업예산을 지원해주는 현행 재정조정제도를 개편하여 수평적 재정균등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민간투자의 활성화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재정정책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자율적 성장기반을 조성하거나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사회간접자원의 확충, 기초하부구조의 조성 등 지역의 성장잠재력 개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역개발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직접투자를 통한 성장촉진보다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개발여건의 조성을 위한 투자도 전적으로 공공투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를 늘려나가는 것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바람직하다 (이규방·김민철, 1998; 모성은, 2000).

우선 민자유치는 재정투자 대체를 통해 총수요 확대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정부가 국공채의 발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면 채권이자율은 물론 전반적인 시장이자율을 자극하여 민간소비와 투자수요를 위축시키게 된다. 또, 정부의 국공채발행은 민간부문의 자금조달을 구축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투자는 부족한 재정을 보전해 줄뿐만 아니라 이자율 상승이나 가처분소득의 감소를 유발시키지 않기 때문에 수요를 구축하지 않으면서 총수요(경기)를 진작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민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정부투자만으로는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없다면, 민간투자이든 공공지출 확대이든 인프라 시설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4) 투자자원 배분체계의 개선

현행예산제도는 장기적 편익을 발생시키는 투자적 재원도 경상적 수입으로 충당하여 재정적 균형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재정력이 취약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기적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지출이 경상지출에 밀려 줄어들고 있다.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예산절감 효과와는 달리 실제로 절감되어야 할 지출은 보호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부문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예산

집행의 비효율이 야기된다.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지출되는 경우에도 제반사업의 투자효율성 심사가 개별투자안의 타당성만을 검증하는데 집중한 나머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가 체계적으로 분석되지 못하고 있다.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투자사업을 위한 계속비 제도는 대부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서 활용되고 있지 않거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별 투자효과가 충분히 비교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재원이 배정·집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행 예산제도를 개편하여 경상적 경비를 중심으로 하는 경상예산과 투자적 지출을 위한 자본예산으로 구분하는 실질적인 자본예산제도와 함께, 재정지출의 성과를 예산편성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도화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본예산제도는 중장기적인 개발계획과 재정계획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자본지출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심사와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경상예산과는 달리 총괄적이고 장기적인 재정균형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예산운영의 신축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둘째, 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재정투융자심사제도의 형식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현재의 심사기준은 실무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객관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평가항목이 세부적으로 편성되지 않

아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층분석이 부족하고, 자치단체의 사업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는 기초심사와 투자심사위원회에 의한 종합심사의 연계가 부족하여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형식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현행 심사제도의 전문성 부족과 예산과의 연계성 미흡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현행 예산편성방식은 개별부처를 기본단위로 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한정된 예산을 많은 투자사업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투자의 우선순위가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개별부처수준의 사업별 우선순위의 재조정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김성태(1991) “경제력의 지역분포와 지방재정 실태,” 지방재정.
- 김안제(1982). “지역경제의 발전”. 지방재정.
- 김영규(1995).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운용 전략,” 지방재정, 14권 4호.
- 김의준(1992). “지역투자의 변화가 국가경제의 효율성과 지역간 경제적 격차에 미치는 영향.” 국토개발연구원
- 모성은(2000). “지방자치단체의 민자유치 의의.” 지방재정. 19권 6호.
- 박세일(1992).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기본 방향,” 오스본·게블러, 정부혁신의

길, 삼성경제연구소(역).
박완규(1997).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관계.” 지방재정. 16권 2호.
박희정(1994).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제 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규방·김민철(1998). 경제구조조정에 따

른 민자유치 제도개선 방안. 국토개발연구원.
최유성(1997).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 한국행정연구원.
한표환(1998).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규제완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시사용어 해설

◆보상적 손해배상(補償的損害賠償)·처벌적 손해배상(處罰的損害賠償)

‘보상적 손해배상’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 주로 재산상의 손실보상인데 비해 ‘처벌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의 악질성을 처벌하기 위해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배상이다. 처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에서 소인(訴因)이 된 불법행위의 반사회성과 비윤리성을 감안, 일반 공중의 입장에서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적 처방으로 볼 수 있다. 환경오염이나 독점금지 위반사례 또는 고의적 살인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 원고측의 청구가 있거나 판사의 판단에 따라 배상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앞서 불법행위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인정돼야 하며 통상 ‘보상적 손해배상금’의 3배 정도를 청구하게 된다.